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05 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 김선교·서천호·김상훈

김위상 • 구자근 • 박덕흠

강대식 · 김성원 · 최수진

서일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·보관·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,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,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 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0조).

법률 제 호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 중 "공공장소"를 "조례로 정하는 장소"로, "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"을 "방치하여서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조례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	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
① 누구든지 도로, 자전거 주차	①
장, 그 밖의 <u>공공장소</u> 에 자전거	조례로 정하는
를 무단으로 <u>방치하여 통행을</u>	<u>장소</u> <u>방치</u>
<u>방해해서는</u> 아니 된다.	하여서는
②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	②
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	
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	
대해서는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	조례로
바에 따라 이동・보관・매각이	
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	
수 있다.	